

심판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근거 및 명칭) 대한럭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 심판위원회 및 그 단체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과 협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 5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26조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5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 협회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8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록 구분)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기타

2.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기타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협회 정관' 제2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제9호의 사유를 제외한다)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가 정한 절차 및 체육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체육회 및 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① 협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과 협회 규정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상임심판 운영

제18조(상임심판의 정의) 체육회가 본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추천한 심판을 상임심판으로 승인하여 안정적으로 심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19조(기능 및 역할) ① 상임심판은 경기와 관련해 일선 지도자, 학부모 등과 연관된 이권에 연루됨이 없이 중립적·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본 협회 심판 교육 담당과 심판들의 권리를 대변한다.
- ② 상임심판은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심판 활동을 하며, 동시에 체육회와 본 협회 심판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 제20조(임무) ① 상임심판은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상임심판은 체육회의 심판의 관련 규정과 본 협회의 정관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상임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 제21조(선임) ① 본 협회는 상임심판 자격 기준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임심판을 승인한다.
- ② 본 협회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체육회에서 정해진 인원수와 제출 양식에 따라 상임심판을 추천한다.
1. 국제심판 및 국내심판 자격 1급(상당) 이상으로 국내 심판경력 4년 이상 자
 2. 추천 시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심판위원, 등록선수 및 지도자가 아닌 자
 4. 매년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수 3분의 2이상 참여가능한 자
 5. 체육회 주관 심판아카데미 이수 자
 6. 본 협회 정관,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22조(활동기간) ① 위원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1년간 활동한다.
- ② 활동기간동안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팀과도 고용관계를 맺을 수 없다.

제23조(수당지원) ① 상임심판은 본 협회에서 지급하는 필요 수당(심판 수당, 출장비 등) 외에 소정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② 상임심판은 매월 말일에 수당을 지원받으며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원받는다. 단, 매년 선임(교체) 절차를 감안하여 11개월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심판 양성 교육(심판아카데미)

제24조(심판아카데미 운영) ①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심판아카데미 운영은 체육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은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체육단체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이 7개 영역 14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2.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3. 교육 참가 심판에 대하여 심판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⑤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체육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체육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25조(회원종목단체별 교육실시) 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심판평가 및 배정

- 제26조(심판평가)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상임심판, 종목단체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회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협회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 제27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28조(심판배정) ① 협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 ③ 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1.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2.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3.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 제29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협회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

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협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명백한 편파판정
2. 오심에 의한 승패여부
3. 득점상황에 대한 오심
4.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불공정한 판정

제30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협회 규정',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31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 제32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심판매뉴얼)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교육과정

영역	과목명	최소 배정시간
스포츠의 도덕적 이해	○ 개인 가치와 스포츠	1시간
	○ 심판 활동의 도덕적 탐구	1시간
스포츠 윤리와 통합	○ 스포츠와 윤리	1시간
	○ 스포츠와 사회 통합	1시간
건전한 경기 문화 정착	○ 공정한 경기 운영과 판정	1시간
	○ 배려와 존중	1시간
도덕적 주체로서 심판	○ 심판 활동의 자긍심	1시간
	○ 심판의 책임감	1시간
심판의 멘탈 관리 전략	○ 심판 스트레스와 극복방안	2시간
	○ 심판 심리 기술	2시간
심판 사례연구	○ 심판 활동에서의 오심사례	2시간
	○ 사회 정의와 심판 비리 사례	2시간
심판 실무실습	○ 경기 참관 및 비디오 판독	2시간
	○ 종목별 경기 규칙 및 심판 판정 기준 비교	2시간
총 교육시간		20시간